

청주지방법원 2021. 6. 11 선고 2019가단290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

담당변호사 성현호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

담당변호사 이종훈

변 론 종 결 2021. 5. 21.

판 결 선 고 2021. 6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. 6. 25.자 증여계약은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23.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

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23.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927 전기·소방공사 인건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8. 5. 18. “C은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위 판결은 2018. 6. 29. 확정되었다.

나. C의 아들인 피고는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. 6. 26. 접수 제65687호로 2018. 6. 2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C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최소한 6,000만 원 이상을 증여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하였다.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금전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4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, (주)G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F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피고의 아버지인 C을

만나 매매계약의 상세 내용을 결정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,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갑 8호증, 을 1, 2, 3, 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H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,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 점,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6,000만 원인데, 피고가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구입자금을 충분히 대출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1억 9,2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등기한 점, ③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3,000만 원은 피고가 H조합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되었고, 피고 명의로 매달 대출원리금이 변제되고 있는 점, ④ 피고가 매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직전에 I 명의로 그 대출원리금을 상회하는 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, 위 돈을 C의 자금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, ⑤ 나머지 매매대금 3,000만 원은 J, K, L, M가 (주)G에 송금한 돈으로 충당되었는바, 위 돈이 사실상 C의 자금이라든가 C이 이들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, 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와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6,000만 원 이상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김수영